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5. 8. 28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8월 14일

나. 발의자: 이성수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8월 21일

라. 상정일자: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8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성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자활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고, 자활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5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을 반영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문 내용을 개정하여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및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규모와 지원기간을 확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(안 제8조)
- 자활기업,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개정(안 제 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7에서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자활사업은 저소득계층이 단순한 현금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- 영등포구 역시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, 사업자금 대여한도와 상환기간은 2004년 조례 제정 당시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, 전세점포 임대지원 규정 또한 2013년 해당 조문이 신설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약 10~20년간의 물가상승과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 - 한편, 현재 영등포구에서 지원 중인 자활지원사업은 전세점포 임대 지원뿐임.
-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「2025년 자활사업 안내」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전세점포 임대지원 및 사업자금 대여한도를 현실 여건에 맞게 상향하고, 상환기간 역시 지침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안정적 운영과 실질적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8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는 기존 7천만원이던 대여금액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, 상환방식을 '5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'에서 '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'으로 개정함.
- 안 제9조의2(자활기업·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)는 임대 지원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, 지원기간도 기존 '1~2년 단위, 최

장 6년'에서 '5년 이하 단위, 최장 10년'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사업의 지원한도가 물 가상승 및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보건복지부의 「2025년 자활사업 안내」 기준을 반영하여 전세점포 임대 지원금과 사업자금 대여 한도를 상향하고, 상환기간을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수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--|-----|
| 의 안 번 호 | 581 |
|--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: 2025. 8. .

발 의 자: 이성수 · 차인영 · 전승관

정선희(4인)

1. 제안이유

자활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고, 자활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5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을 반영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문 내용을 개정하여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및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규모와 지원기간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(안 제8조)
- 나. 자활기업,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개정(안 제 9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7천만원”을 “1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활기업은 5년거치후 5년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기간”을 “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2항 전단 중 “1억원”을 “3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년 또는 2년”을 “5년 이하”로, “6년”을 “10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8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<u>7천만원</u>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.</p> <p>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<u>자활기업</u>은 <u>5년거치후 5년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기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· ④ (생 략)</p> <p>제9조의2(자활기업,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<u>1억원</u>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해당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, 임차인, 보장기관 등 3자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. 보장기관은 임대보증금 반환처로 서</p> | <p>제8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 ----- ----- --- <u>1억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----- <u>자활기업</u>은 <u>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</u> ----- -----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2(자활기업,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3 <u>억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
| | |
|--|--|
| 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된다. | -----. |
| ③ 전세점포 임대 지원기간은 <u>1년</u> 또는 <u>2년</u>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, 최장 <u>6년까지</u> 연장할 수 있다. | ③ ----- 5 <u>년 이하</u> ----- ----- <u>10년</u> ----- ---. |
| ④ · ⑤ (생 략) |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|